

[별표]

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기준 (제10조제1항 관련)

표시방법	인증표시
컬러로 도안	

※ 비고

1. 우수사업자 인증표시는 인증된 우수사업자만 사용하여야 한다.
2. 우수사업자 인증표시는 해당 사업자가 이용하는 차량, 시설, 안내책자, 명함, 신문 광고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절한 크기로 제작·활용할 수 있다.